

##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분쟁건도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!

-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·심의를 담당하는 내용의 「발명진흥법」, 「반도체 배치설계법」 공포(1.30) -
-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한 분쟁해결 기대 -

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‘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’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.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‘반도체 배치설계권\*’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」이 30일 공포\*\*되었다고 밝혔다.

\* 반도체 배치설계: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

\*\* 시행시기: 공포 후 6개월

### <반도체 배치설계권’에 관한 분쟁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에서 신속 해결>

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. '23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\*되었고,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(조정성립률 53%)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.

\*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(건): (' 22) 76 → (' 23) 159

이번 법 개정은 ‘반도체 배치설계권’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\* 신속·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다.

\*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: (기존) 산업재산권, 직무발명, 영업비밀, 부정 경쟁행위 → (법 시행 후) 배치설계권 추가

### <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 위촉>

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, 상표·디자인 분야 19명, 영업비밀·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·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의 기술·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.

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,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.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 “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특허·상표·디자인·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·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[www.koipa.re.kr/adr](http://www.koipa.re.kr/adr)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(1670-9779)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※ 붙임: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반도체 배치설계권 개요

|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 | 책임자 | 과 장 | 양재석 (042-481-5213) |
|       | 산업재산보호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영미 (042-481-8181) |
|       | 산업재산정책국   | 책임자 | 과 장 | 신원혜 (042-481-8254) |
|       | 산업재산창출전략팀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호영 (042-481-3586) |
|       | 기획조정관     | 책임자 | 과 장 | 박진환 (042-481-5051) |
|       | 혁신행정담당관실  | 담당자 | 사무관 | 유성전 (042-481-5062) |



**소관 업무**

**<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>**

| 업무    | 종전  | 법 시행 후*  |
|-------|---|--|
| 분쟁 조정 | 1. 산업재산권<br>2. 직무발명<br>3. 영업비밀<br>4. 부정경쟁행위 | 1. 산업재산권<br>2. 직무발명<br>3. 영업비밀<br>4. 부정경쟁행위<br>5. 배치설계권(신설)  |
| 심의    | 1.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                   | 1.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<br>2.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(신설) |

\* 법 시행시기는 법률 공포 후 6개월

**조정위원 구성**

**<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구성(24.1월 기준)>**

| 정부 | 상표 디자인 | 특허(실용신안) |       |       |       | 법률<br>(영업비밀, 부정경쟁행위) | 직무발명 |
|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| 기계·금속    | 화학·생명 | 전기·전자 | 정보·통신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1명 | 19명    | 11명      | 7명    | 5명    | 5명    | 27명                  | 5명   |

**□ 의의**

-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
-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일종, 나라별로 부르는 명칭 상이

<나라별 명칭>

| 한국                      | 미국        | 일본             | 유럽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배치설계<br>(Layout Design) | Mask Work | Circuit Layout | Topography |

**□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발생**

-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창작성\*이 있는 배치설계를 특허청에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

\* 여기서의 ‘창작성’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써 통상적이지 않은 특성이 나타나 기존의 제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배치설계를 의미

**□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효력**

- 영리목적의 이용권을 독점하는 등 다른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양도, 공유, 질권설정, 이용 가능

**□ 반도체 배치설계의 보호대상**

- 배치설계권 그 자체,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 집적회로, 반도체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(컴퓨터, 통신기기 등 최종제품)

※ 반도체 배치설계권도에 관한 상세한 제도설명은 특허청 누리집 참조  
: 특허청 누리집>책자/통계>지식재산 동향>반도체배치설계권 동향